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280호 2012. 11. 14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12호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정선군 조례 제2313호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 정선군 조례 제2314호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 정선군 조례 제2315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01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6, FAX:560-2592)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1. 14.

정선군 조례 제2312호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u></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 2. (생략)</p> <p>3. <u>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u></p> <p><신설></p>	<p><u>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3조(기능) ①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u></p> <p><u>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u></p>
<p><u>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신설></p>	<p><u>제8조(수당 등)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신설></p>	<p><u>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u></p>
<p><u>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u></p>	<p><u>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 -----.</u></p>

개 정 이 유

-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위원회 기능 확대(제3조)
 -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 위원회 심사기준 근거 신설(제3조의2)
- 위원회 위원 수당규정 개정(제8조)
 -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제10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1. 14.

정선군 조례 제2313호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선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담당과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전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정선군수), 위원(관련 업무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 위원수(10명 이내), 임기(2년)
- 위원회 위원의 기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안전심의 등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1. 14.

정선군 조례 제2314호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정선군경계 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회고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 ⑦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 ⑧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

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판사), 위원(판사,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법학교수·지적측량기술자·감정평가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사업지구의 읍·면장 등), 위원수(11명 이내), 임기(2년)
- 위원회 위원의 기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위원회의 결정 및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적소관청에 문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1. 14.

정선군 조례 제2315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정선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2. 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3. 법 제82조의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4. 법 제90조제1호의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5. 법 제85조제1항제6호의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지역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6.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지역택시 승차거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요금징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및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및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u> 2. <u>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u> 3. <u>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송행위 (모텔, 찜질방, 펜션 등)</u> 4. <u>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u> 5. <u>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 주차행위</u> 6. <u>지역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u> <p>② ~ ③ (생략)</p>	<p><u>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u></p> <p>제1조(목적)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 ----- ----- -----</p> <p>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u> 2. <u>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u> 3. <u>법 제82조의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u> 4. <u>법 제90조제1호의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u> 5. <u>법 제85제1항제6호의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지역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u> 6. <u>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지역택시 승차거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요금징수</u> <p>② ~ ③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명시된 조문 변경
 - 제명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변경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삭제(제1조~제2조)
- 신고 및 대상에 있어 관련법규 명시(제2조)

규 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1. 14.

정선군 규칙 제1201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u>*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u>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	
	- BIS자기자본비율(안정성,7점) <u>*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u>	7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7점)	7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6점)	6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5점) <u>*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u> <u>*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u>	5	
	소 계	15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u>관내지점의 수</u>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u>*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u>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 능력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추진 능력	소 계	10	
	가. <u>지역사회에 대한 기여</u>	(5)	
	나. <u>군과의 협력사업</u> <u>* 자치단체별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u>	(5)	

※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금고지정) ① (생 략) 1. ~ 3. (생 략) 4. <u>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u> ② ~ ③ (생 략)</p>	<p>제4조(금고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u>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u>에 의한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③ ~ ⑨ (생 략)</p>	<p>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제4조제1항제2호</u>-----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개정에 따라 지역조합기준 마련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규정 삭제 등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각 호의 일부조항 삭제 (제4조제1항제4호)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별표)
 - 지역조합(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지역주민 이용편의성과 금고 업무 관리능력 배점 확대
 -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 및 자치단체 자율항목 축소